

제410회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9월20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3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2023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5.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6.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3581)
7.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02)
8.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6)
9.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0)
1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0)
1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2)
1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8)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7)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3)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5)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6)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8)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04)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25)
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75)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94)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4)
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3)
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97)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37)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52)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7)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9)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16)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8)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3)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2)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6)
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24)
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8)
3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387)
4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7)
4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50)
4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1)
4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2)
4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81)
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42)
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3)
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2)
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6)
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57)
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59)
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6)
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6)
5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22)
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37)
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5)
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8.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8)
5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5)
6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52)
61.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9)
6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5)
63.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9)
64.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22)
6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13)
66.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13)
6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0)
6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93)
69.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0)
70.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40)
71.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03)
7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65)
7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8)
7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834)
7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1)
7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1)

7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94)
7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6)
7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44)
8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24)
81.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38)
8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87)
8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99)
84.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07)
8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8)
8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0)
8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97)
8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7)
8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67)
90. 제주4·3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위성곤 의원 등 44인 발의)(의안번호 2121904)
9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40)
9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4)
9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6)
9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7)
9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833)
9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03)
9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89)
9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7)
9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30)
10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575)
10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61)
1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1)
10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87)
10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01)
10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5)
10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2)
10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2)
10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93)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2)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6)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8)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1)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1)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75)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0)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2)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56)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25)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12)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4)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4)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9)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4)
1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22)
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5)
1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33)
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7)
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8)
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2)
13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6)
13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96)
13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1)
13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83)
13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8)
13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4)
13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70)
13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01)
138.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7)
139.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4)
14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1)
141.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1)
142.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9)
14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45)
1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8)
1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55)
1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5)
1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46)
1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09)
1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6)
150.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권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2636)
151.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41)
1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3)
1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7)
1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9)
1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8)
1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69)

1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5)
1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74)
1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8)
1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6)
161.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7)
16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54)
16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2)
16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24)
16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2)
16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1)
16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94)
16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0)
16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37)
170.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6)
17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20)
17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5)
173.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45)
17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470)
17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10)
17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53)
17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0)
17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06)
17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8)
18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7)
18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24)
18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68)
18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3)
18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0)
18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80)
18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31)
18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26)
18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04)
18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34)
19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66)
19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89)
19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88)
19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0)
19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55)
195. 녹색어머니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26)
19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31)
19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5)
19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35)
1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86)

20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61)
2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3)
2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08)
2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09)
2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76)
2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0)
2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39)
2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2)
2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7)
2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95)
2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80)
2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8)
2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25)
21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10)
21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72)
21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28)
21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2)
21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3)
218.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95)
219. 주취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56)
220.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70)
221.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46)
222. 주취자 보호 및 공공안전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48)
22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22)
22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38)
22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93)
22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52)
2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9)
22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0)
22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25)
2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0)
23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4)
23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09)
23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9)
23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5)
235.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7)
23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7)
23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7)
23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42)
23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2)
24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5)
2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출석 요구의 건(추가)
242.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9
2.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
3. 2023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
4. 2023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
5.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21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21
2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출석 요구의 건	25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25
242.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26
6.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3581)	26
7.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02)	26
8.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6)	26
9.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1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0)	26
1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0)	26
1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2)	26
1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1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8)	26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7)	26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3)	26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5)	26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6)	26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8)	26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04)	26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25)	26
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75)	26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94)	26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4)	26
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3)	26
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97)	26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37)	26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52)	26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7)	26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9)	26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16)	26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8)	26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3)	26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2)	26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6)	26
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24)	26
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38.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8)	26

3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387)	26
4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7)	26
4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50)	27
4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1)	27
4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2)	27
4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81)	27
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42)	27
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3)	27
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2)	27
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6)	27
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57)	27
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59)	27
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6)	27
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6)	27
5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22)	27
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37)	27
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5)	27
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58.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8)	27
5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5) ..	27
6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52) ..	27
61.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9)	27
6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5)	33
63.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9)	33
64.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22)	33
6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13)	33
66.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13) ..	33
6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0)	33
6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93)	33
69. 국정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0)	33
70.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40)	33
71.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03)	33
7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65) ..	33
7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8) ..	33
7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834)	33
7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1)	33
7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1)	33
7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94)	33
7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6)	33
7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44)	33
8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24)	33
81.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38)	33

8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87)	33
8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99)	33
84.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07)	33
8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8)	33
8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0)	34
8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97)	34
8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7)	34
8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67)	34
90. 제주4·3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위성곤 의원 등 44인 발의)(의안번호 2121904)	34
9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40)	34
9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4)	34
9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6)	34
9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7)	34
9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833)	34
9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03)	34
9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89)	34
9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7)	34
9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30)	34
10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575)	34
10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61)	34
1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1)	34
10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87)	34
10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01)	34
10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5)	34
10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2)	34
10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2)	34
10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93)	34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2)	34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6)	34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8)	34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1)	34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1)	34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75)	34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0)	34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2)	34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56)	34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25)	34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12)	34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4)	34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4)	34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9)	34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4)	34
1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22)	34
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5)	34
1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중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33)	34
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7)	34
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8)	34
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2)	35
13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6) ...	35
13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96) ...	35
13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1) ...	35
13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83)	35
13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8)	35
13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4)	35
13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70)	35
13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01)	35
138.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7)	35
139.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4)	35
14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1) ...	35
141.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1)	35
142.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9)	35
14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45)	35
1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8)	35
1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55)	35
1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5)	35
1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46)	35
1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09)	35
1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6)	35
150.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권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2636) ...	35
151.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41)	35
1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3)	35
1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7)	35
1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9)	35
1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8)	35
1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69)	35
1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5)	35
1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74)	35
1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8)	35
1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6)	35
161.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7)	35

16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54)	35
16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2)	35
16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24)	35
16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2)	35
16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1)	35
16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94)	35
16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0)	35
16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37) ..	35
170.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22536)	36
17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20)	36
17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5)	36
173.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45)	36
17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470)	36
17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10)	36
17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53)	36
17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0)	36
17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06)	36
17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8)	36
18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7)	36
18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24)	36
18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68)	36
18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3)	36
18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0)	36
18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80)	36
18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31)	36
18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26)	36
18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04)	36
18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34)	36
19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66)	36
19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89)	36
19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88)	36
19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0)	36
19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55)	36
195. 녹색어머니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26)	36
19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31)	36
19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5)	36
19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35)	36
1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86)	36
20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61)	36
2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3)	36
2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08)	36
2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09)	36
2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76)	36

2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0)	36
2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39)	36
2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2)	36
2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7)	36
2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95)	36
2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80)	36
2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8)	36
2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25)	36
21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10)	36
21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72) ...	37
21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28) ...	37
21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2) ...	37
21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3) ...	37
218.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95) ...	37
219. 주취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56)	37
220.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70)	37
221.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46)	37
222. 주취자 보호 및 공공안전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48)	37
22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22)	37
22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38)	37
22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93)	37
22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52)	37
2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9)	37
22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0)	37
22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25)	37
2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0) ...	37
23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4)	37
23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09)	37
23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9)	37
23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5)	37
235.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7)	37
23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7)	37
23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7)	37
23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42) ...	37
23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2) ...	37
24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5) ...	37

(15시06분 개의)

○위원장 김교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국정감사와 관련한 안전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7월에 임명되신 이후 상임위에 처음으로 출석하신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대한 쇄신 요구가 지속되는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고위직 간부 자녀의 경력직 채용 의혹과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도 등 우리 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며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안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변화하는 선거 환경에 걸맞은 조직 쇄신을 통해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먼저 10월 11일에 실시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차질 없이 관리하겠습니다. 비록 일부 지역에서만 치러지는 선거이기는 하지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6개월 정도 앞두고 치러지는 만큼 흠 없는 선거관리와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공정한 선거 분위기가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12월에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개시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돌입합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현장 실무 중심의 선거관리 체제를……

○위원장 김교홍 총장님, 간단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전 직원 대상 교육(OJT)을 실시하여 선거관리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법규 운용 기준을 마련하고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유권자 대상 선거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선거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표 참여 홍보를 통해 국민의 한 표가 소중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로 대응하고 투표소 안전 대책을 강화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들의 따끔한 질책을 늘 되새기고 지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조직 운영에 있어서의 각종 논란을 조속히 개선하여 다시금 국민 신뢰를 받는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우리 위원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감사합니다.

선관위가 명실상부한 헌법기관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사무총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직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여문·민성철·신강수 입법조사관들입니다.

(인사)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행안위가 그래도 전체 상임위원회 중에 가장 많은 숫자의 의안을 심사·처리하고 있는데 우리 조사위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이상민 장관께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시다라는 다른 기관장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8월 달에 여야 합의가 돼서 우리 전체회의 상임위가 잡혔는데 여당이 한 건의 문제 때문에 참여를 안 해서 나머지 기관장들께서 이 회의에 참석을 못 해서 파행이 됐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간사끼리 합의도 잘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무이기는 하지만 합의된 내용을 다 가지고 기관장들이 참여 안 하는 거는 그건 국회의 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관장님들께서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손을 들)

○위원장 김교홍 뭐 뭐, 왜 손을 드셨습니까?

○이만희 위원 의사일정 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려고……

○위원장 김교흥 아, 의사일정? 예.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실 그 파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다 생략해 버리시고 결과만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위원회가 다시 열리면서 이태원 관련 법의 강행 처리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어떤 유감 표명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진행은 과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김교흥 제가 유감 표명을 한다고요?

○이만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위원장 김교흥 이만희 간사님이 유감 표명을 해야지. 하다가 나가 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왜 제가 유감 표명을 합니까?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 자꾸 끼어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교흥 아니, 말씀을 좀 잘하셔야지.

○이만희 위원 그리고요 오늘 의사일정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된 사항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대표님, 자리가 그 옆자리입니다.

○김웅 위원 아니, 우리 대표님 아무 데나 앉으시면 그게 자리지요.

○김기현 위원 난 늘 두 번째 앉는 게 습관이 되었으니까……

○이만희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 김교흥 예, 말씀하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이만희 위원 조금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국정감사의 기관증인 채택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선거관위의 인사와 관련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특혜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도 이번에 도출됐었고 또 여러 가지 보안 컨설팅과 관련해 가지고도, 국정원 관련한 여러 관계기관의 감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곧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국민적 의혹이라든지, 과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된 선거 공정관리의 헌법적 책무를 다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회법이라든지 또 국정감

사에 대한 법률들을 검토하면서 또 그간 중앙선거관위 국정감사의 관행도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참석하셔서 인사만 하시고 이석하시는 것으로 또 선관위원들은 그동안 국정감사에 출석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상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법에 금지시켜 놓은 부분이라서 그런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국회법이라든지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 관련된 문안들을 검토해 본 결과로는 이분들을 참석시키지 않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국회에 출석하셔 가지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고 조직 관리라든지 사무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을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동안 중앙선거관위의 사무총장에 대한 답변 과정을 들어 보면, 주요한 내용들 또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대한 과정을 물어보면 모두가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셨다, 우리는 위원회에서 한 결정을 단순히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는 그런 식의 답변들이 많았음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도 중앙선거관위 국정감사에서는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 9명 전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요구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흥 강병원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강병원 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교흥 아니아니, 그 부분은 여야 간사끼리 다시 협의를 해 보시고 그동안에 간사님들께서 합의를 해서, 오늘 기관증인은 안대로 채택을 하고,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두 분이 협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이만희 위원 간사 간 협의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중앙선거관위의 기관증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공식으로 놔두고……

○위원장 김교흥 중앙선거관위만 기관을 의결하지 말자?

○이만희 위원 중앙선관위라도 기관증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야 되니까요……

○위원장 김교흥 그것은 보류하고?

○이만희 위원 그 사항이라도 보류를 하고……

○위원장 김교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강병원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교흥 얘기하세요.

○강병원 위원 기관증인의 문제는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국회법을 보더라도 우리 행안위의 소관 사무가 중앙선관위의 사무와 관련된 일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를 우리가 국감을 한다 할지라도 선거관리위원장께서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인사말 하시고 빠지시고 사무총장에게 그 사무와 관련된 것을 국감을 해 왔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들 전원을 출석시키자고 하시는 것은 새로운, 기존에 행안위가 국감에서 채택해 왔던 기관증인과는 별도의 추가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보류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 사무총장이 기관증인으로 오는 것은 하고 나머지 또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추가로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위원장 김교흥 간사님, 잠깐만요. 너무 길어지는데.

일단은 오늘 기관증인을 두 분이 합의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것은 채택을 하고 선거관리위원장 부분은 두 분이 협의를 해서, 종감 때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아니면 종감이 아니더라도 시작할 때도 할 수 있으니까, 시간적인 게 일주일 정도 남아 있으니까, 채택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조정하고, 그동안에 얘기 안 하다 오늘 갑자기 이만희 간사님이 이렇게 불쑥 말씀을 하시면 운영하는 데 굉장히 차질이 오니까 그렇게 협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님.

○이만희 위원 제가 오전 중에……

○위원장 김교흥 용혜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혜인 위원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관련되어서는 이따 상정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양당

간사님들 말씀하셔서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안은 아닌데 그냥 지금 한꺼번에 말씀드리는데 나올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오송 참사 유가족분들이 국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유가족분들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오송 참사 진상규명에 힘써 달라라는 요청을 하셨는데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참 유족분들 앞에 얼굴을 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라도 오송 참사에 대한 진상이 어느 정도 규명이 되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각 기관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사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공분을 외면한 채 참사가 잊혀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충북과 청주시가 예견된 집중호우와 미호천 범람 위험신호에도 궁평2지하차도를 포함해서 왜 대피 명령과 도로 통제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충북 소방이 긴급구조기관의 의무를 다했는지,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을 허위로 국회에 보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는 유가족분들의 주장에 저는 적극 공감하는 바이고요,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국감계획서 채택하기 전에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충청북도를 포함하는 것을 양당 간사님들께서 다시 한번 논의해주시기를 그리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도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회가 결의하면 충북에 대한 국정감사 충분히 가능합니다. 19대부터 21대까지……

○위원장 김교흥 정리를 해 주시지요.

○용혜인 위원 대상기관 검토를 해 봤는데 보통 8개 지자체 진행했지만 올해는 7개 지자체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9개, 10개 다룬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 격년으로 했다는 것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년을 연달아 국정감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고 관례는 관례일 뿐입니다.

아까 이만희 간사님이 선거관리위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충북 역시도 제의를 해야만 하는 어떤 법률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마저 유가족분들의 울분을 외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충청북도와 오송 지하차도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가족분들의 눈물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함께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북과 관계기관을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추가해 주실 것을 그리고 다시 논의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희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이제 그만하세요.

○이만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위원장 김교흥 두 분이 나가서 협의해 갖고 오세요. 왜……

○이만희 위원 이게 일반……

○위원장 김교흥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이만희 위원 뜬금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교흥 아니, 지금 상임위 여는데 오늘 바로 직전에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두 분이 다 여야 간사끼리 협의해 놓고?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저도 손 빠질 것 같습니다. 팔 빠지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은 조은희 위원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

말씀하세요.

○조은희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평소에 위원장님을 존경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감사합니다.

○조은희 위원 오늘도 존경하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9월 11일 날 중앙선관위원장께서 청렴 실천 서약식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언론에 퍼포먼스를 한다고 중앙선관위가 청렴하고 앞으로 특혜채용이 없고 이렇게, 또 보안 컨설팅을 받고 나서도 아무 문제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원장은 지금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그냥 서약식만 받고 국민 앞에 어떤 입장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국정감사 때 우리가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을 불러서 앞으로 정말 청렴할 거냐, 인사비리가 없을 거냐, 그리고 보안 컨설팅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관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

사법 7조 1항에 보면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우리가 충분히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서 물을 수 있는데 왜 이 전대미문의, 사실 중앙선관위가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국민도 계시는데 왜 증인 채택을 이렇게 얼버무리고 계신지.

○위원장 김교흥 얼버무리는 게 아니에요.

○조은희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나 민주당 또 민주당 간사님은 중앙선관위의 노태약 위원장을 보호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런 의혹을 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을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존경 안 해도 좋아요. 그런데……

○조은희 위원 앞으로도 존경할 수 있게 증인 채택을 꼭 하게 해 주시고.

○위원장 김교흥 빨리 정리를 해 주세요, 발언에 대해서.

○조은희 위원 그리고 간사 간에 협의를 하라는 것은 저희들 이태원 특별법 때 빠져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아예 중앙선관위에 관한 증인 채택을 다음으로 미루시든지 그런 아주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희 위원 제가 이것을 미루자고 한 얘기는 이 사람들은 일반증인이 아니라 기관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그만하세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이 기관증인 채택, 일반증인 채택은 충분히 간사님들이 그동안에 협의를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합의한 대로 안을 오늘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여야 간사님들이 협의를 하라는 게 제가 잘못했습니까?

○조은희 위원 중앙선관위 증인은 지금 빼 주십시오.

○이만희 위원 아니,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위원장 김교흥 아니, 중앙선관위는 어차피 나중에……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교흥 왜 말하는데 자꾸만 그러십니까, 간사님은?

○이만희 위원 본인도 자꾸 그러서 놓고 제가 얘기하면 그렇게 못 하게 하세요?

○위원장 김교홍 아니,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무총장은 당연히 기관증인으로 와야 되는 건데 왜 그것을 빼고 합니까?

○이만희 위원 다른 분들도 기관증인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무총장도 당연히 오셔야 되지요.

○위원장 김교홍 그럼.

○이만희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오시고 선관위원도 오시고 총장도 오시고 다 와야 되지요.

○위원장 김교홍 아니, 그런데 두 분이 협의하다 보면 여러 방안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오늘은……

○이만희 위원 아니, 이것은 기관증인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합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김교홍 오늘은 이 안대로 채택하고 두 분 협의해서 중앙선관위원장을 놓고 두세 분씩 여야 해서 질의할 수도 있는, 합의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반반 증인 채택이 됩니다.

○위원장 김교홍 뭐가 반반이에요?

○조은희 위원 반반씩은 아니더라도 증인 채택은 반반 증인 채택……

○오영환 위원 발언권 얻어서 발언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게 아니고 상임위에서 의결하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간사님들이 역할의 책무를 다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 전체회의 하는데 자꾸만 시간을 지연시킵니까, 여태까지 뭐하시다가? 아니, 간사님들 여태까지 뭐……

○이만희 위원 아니, 기관증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행안부장관 뺀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교홍 뭐가요?

○이만희 위원 만약에 우리 여야 간사 합의로 해 가지고 행안부장관이나 저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빼자고 그러면 뺄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교홍 왜 빼요?

○이만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교홍 아니, 간사님들이 그것 뺄 수 있겠냐고.

○이만희 위원 이분들은 기관을 대표해서 나오시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결정할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아니, 내 얘기는 여야 간사 협

의해서 합의가 되면, 기관증인은 오늘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을 놓고 두세 분씩 대표로 질의할 수도 있어요.

○이만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거관리위원장하고 전체 위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게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왜 여태까지 합의 다 해 놓고 오늘 뜬금없이 그 안을 갑자기 내밀어 갖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만희 위원 아니, 기관증인에 대해서는 달리 별도의 합의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김교홍 간사님, 그리고 오늘 기관증인 채택을 선관위 빼고 하면 나중에 여야 간사끼리 합의가 불발하면 선관위는 이번에 국정감사 못해요. 그것을 위원장으로서 합니까?

○이만희 위원 기관증인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넣고 빼고 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법상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병원 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이만희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또한 법상 되는 것이지만 관례로 빠진 거예요.

○위원장 김교홍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이 말 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아니 법사위에서 대법원장·헌재소장 불러 놓고 합니까?

○강병원 위원 안 합니다!

○이만희 위원 아니, 그러면 대법원하고 헌재에서 인사비리가 있었고 그런 게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교홍 아이참, 왜 자꾸만 여태까지 안 하던 것을 갑자기 내밀어서 상임위를 이렇게 합니까?

○강병원 위원 적어도 헌법기관의 장을 존중을 하십시오.

○이만희 위원 아니, 헌법기관의 장을 존중하는데 그 기관에서 말씀드리는 이런 인사 참사라든지 보안 컨설팅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냐고요.

○위원장 김교홍 간사님 두 분이 나가서 협의해 갖고 오세요.

이만희 간사님, 두 분이 나가셔서……

○조은희 위원 정회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정회합니다. 정회해서 의논해서 합시다.

○김웅 위원 잠깐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김교홍 정회? 시간이 없어, 우리가.

○조은희 위원 시간이 없어도 정회하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시간이 없다니까.

○권인숙 위원 시간이 없어. 그냥 진행해요.

○오영환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이만희 위원 기관증인의 문제가 왜 합의할 사항이에요, 법상 정해져 있는데?

○위원장 김교흥 둘이 협의해 갖고 와. 둘이 협의해 갖고 와요. 둘이 협의해.

○문진석 위원 모처럼 열린 회의를 이런 식으로 또 딜레이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위원장 김교흥 나가…… 일어났잖아요.

○옹혜인 위원 이 사안만큼 오송 참사에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국민의힘 위원님들!

○위원장 김교흥 둘이 협의하고 그러면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이만희 위원 본격적인 의사진행은 무슨……

○위원장 김교흥 일정에 들어가겠다고, 진행을.

○이만희 위원 아니, 기관증인을 무슨 합의를 통해서 합니까? 기관증인은 법에 정해져 있는 증인들인데.

○옹혜인 위원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면 그냥 하는 거지요!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좀 이따가 합시다.

○위원장 김교흥 아니, 지금 중앙선관위원장 갖고 얘기해 보라고.

○강병원 위원 (이만희 위원석 옆에서)

아니, 선관위에 대한 국감계획서를 채택을 하게 되면 기관증인으로 사무총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추가로 더 하자는 거잖아요. 추가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만희 위원 아니, 원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거위원들이 모두 다 기관증인이 되는 겁니다. 기관증인이 되는데 그동안 헌법기관의 그것을 존중해서 저거를 하는 겁니다.

○강병원 위원 (이만희 위원석 옆에서)

아니, 8월 18일에도 다 합의했는데 전북도지사 갑자기 출석시키자고 해 가지고 파행시키더니 이제 국감 파행을 위한 무슨 사전 정지 작업이요?

○위원장 김교흥 두 분 간사님들 나가서 협의해 갖고 오세요, 빨리.

○이만희 위원 우리가 어디 가서 합의를 해 와요? 이것은 합의할 사항이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시네.

○위원장 김교흥 위원장 방에 가서 협의해.

○옹혜인 위원 합의가 아니면 그냥 처리하면 되지요!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합의되기 전에 회의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정회를 하고 합의하고 회의합시다.

○천준호 위원 회의 진행하세요, 빨리! 회의 진행하세요, 회의.

○조은희 위원 정회해 주십시오!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교흥 우리 시간이 안 돼.

○이만희 위원 아니, 기관증인을 무슨 합의를 통해서 정합니까?

○위원장 김교흥 두 분이 협의해요. 왜 뜬금없이 오늘 전체회의 하는데 갑자기 안건을 내밀어서 자꾸만 이렇게 꼬이게……

○이만희 위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 김교흥 지난번 전북도지사도 그러더니만!

○이만희 위원 왜 전북도지사 얘기를 저한테 하십니까.

○위원장 김교흥 전북도지사, 다 합의해 놓고 전북도지사 또 그래 가지고 파행됐잖아요! 자꾸만 이럴 거예요?

○강병원 위원 (이만희 위원석 옆에서)

그때도 전북도지사 갑자기 들고나왔잖아, 합의도 안 된 것을! 그것 안 들어 준다고 그래서 파행한 게 누굽니까? 국민의힘 아니었어? 지금도 다 합의해 놓고, 추가된 사항을 가져왔으면 요청을 할 사안이지……

○이만희 위원 아니, 기관증인이 어떻게 해서 합의할 사항입니까? 기관증인은 법상 정해져 있는 증인이란 말입니다.

○박성민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셔야지 일방적으로 다른 한쪽의 편을 들면 됩니까. 몇 분이서 지금 우리 간사님 몰아세우네!

○위원장 김교흥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합의를 해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합의를 해서 하세요, 합의를 해서」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이만희 위원 아니,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결정을…… 법에 정해져 있는 걸 마음대로 바꾸시겠

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교흥 아니, 지금까지 안 한 부분을 새롭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기관증인으로 하자는 것에 위원장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는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무총장이 국정감사를 받아 왔고요, 법사위에서도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질의에 응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머지 추후에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하는 것은 여야 간사 협의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장 김교흥 그러면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언제부터 위원장을 했다고,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교흥 아니, 일방이 아니라 기회를 많이 줬잖아요. 기회를 줬는데 뭘.

(장내 소란)

좀 될 것 가지고 해, 아이참. 좀 앉으셔.

○강병원 위원 (이만희 위원석 옆에서)

이것은 중앙선관위라고 하는 헌법기관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업무에 대해서 뭔가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만희 위원 영향을 끼칠 의도 전혀 아닙니다, 간사님.

○강병원 위원 (이만희 위원석 옆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무총장만 기관증인으로 채택을 해 왔던 겁니다, 국회가.

○박성민 위원 간사님, 우리도 목소리 크니까 고함 지르지 말고 두 분이서 협의하라니까요.

○이만희 위원 아니,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법에 정해져 있는 걸 그대로 하자니까 왜 그래요?

(장내 소란)

○위원장 김교흥 자, 조용히 하세요!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5시32분)

○위원장 김교흥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15건의 청원 중 3건의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이 경과하였습니다.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국회법 제127조제6항에 따라 의결로써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간사 하실 때는 안 이래 놓고 지금 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전봉민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위원장님 잠시 정회……

○위원장 김교흥 뭘 정회를 해. 여태까지 합의를 다 해 놓고 오늘 와서 이러면 돼요, 오늘 와서?

○강병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박 위원님.

아니, 대법원장하고 헌재소장, 중앙선관위원장을 어떻게 데려다 놓고 증인신문을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중앙선관위원회에다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전혀 아닙니다.

○박성민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그런 것 전혀 아닙니다.

○강병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그게 아니라 그러면…… 국회가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해 왔어요. 아니, 대법원장하고 헌법재판소장을 데려다 놓고 증인신문합니까. 이것 옳지 않아요.

(장내 소란)

○위원장 김교흥 그러면 다들 요구하니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교흥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은 상정을 했고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15건의 청원 중 3건의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이 경과하였습니다.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의결로써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청원 3건의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심사기간은 그동안의 상임위 관례에 따라 제21대 국회 임기만료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교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간사 위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의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6시15분)

○위원장 김교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올해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10월 10일부터 26일까지로 하고 행정안전부 등 20개 위원회 선정기관과 서울경찰청 등 11개 본회의 승인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해당 시·도경찰청에 대하여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중앙감사반이 감사를 실시하고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경찰청에 대하여는 지방감사 제1반과 제2반을 나누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예년에 비해 짧은 감사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앙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을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26일에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국정감사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른 세부 일정의 조정과 지방감사반의 구성 변경 등 국정감사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간사 협의를 통해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3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6시17분)

○위원장 김교흥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할 것과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서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각 위원님들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접수된 서류제출 건은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을 요구하고 의결 이후로 접수되는 서류 또는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각 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고자 합니다.

다만 서류 또는 자료제출 요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하므로 적법한 송달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정해진 기한을 고려해서 요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절차에 따라 2023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김교홍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국정감사 일반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요구와 관련한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기관장 등 기관증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의결하고 일반증인은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각 시도의 자치경찰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소속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나 업무에 있어서는 시·도경찰청과 연관성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지난해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감 시에는 기관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이어지는 경찰청 국감에서는 일반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요구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교홍 왜, 또 뭐예요?

○이만희 위원 아까 우리 얘기하던 선관위 관련해 가지고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교홍 그건 정리하면 나중에 의결해야 되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여야 간사만 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의결할게요.

○이만희 위원 의결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교홍 예. 결정적일 때 꼭 이렇게, 아 이 나 참……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6시20분)

○위원장 김교홍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동안 관행상 90년도 이후에……

○문진석 위원 87년 이후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87년이나 90년도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 헌재소장,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지난번의 인사 문제에 문제가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 기관 국정감사 때 선거관리위원회장이 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것을 밝도록 여야 간의 간사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잘 유념하시고.

여야 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용혜인 위원 (손을 들)

○위원장 김교홍 왜 용혜인 위원님?

○용혜인 위원 이의 있어서 의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천준호 위원 저도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용혜인 위원은 아까 하셨으니까 천준호 위원님.

○천준호 위원 지금 여야 간사 간의 논의가 있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원래 오늘 회의가 진행되는 최초에 저희가 들어오면서 설명 들었던 내용하고 다른 안건이 중간에 불쑥 제안이 돼서 간사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보고 무조건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위원들이 이번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사실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이 충북도청입니다. 지난 오송 지하도 참사 때 얼마나 안타까운 희생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작년의 이태원 참사가 그대로 재현된 그런 현장이었는데요 그 오송 지하도 참사가 있는 이후에 한 번도 우리 행안위 상임위를 열지 못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그와 관련된 질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간사들끼리 협의를 하셨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의견이 있었지만 참고 기다렸는데 한쪽에서 갑자기 일방적인 의사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고 나갔다 오시더니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선관위원장을 관례도 없는 이런 예를 가지고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하니, 그러면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하시고, 지난번에 행안위 소집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오송 지하도 참사는 한 번도 국회에서 언급도 안 한 상태로 넘어갔는데 그 유가족들은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 게 당연히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위에서 한 번도 논의도 못 했는데 국정감사에서든 논의를 못 하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교홍 아니, 그건 아니고요.

천준호 위원님의 지적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사 간에 또 협의를 해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일반증인으로 채택해서 저희들이 국감을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천준호 위원 언제 합니까, 언제?

○위원장 김교홍 그것은 일정을……

○이만희 위원 종감 때 하는 겁니다, 종감 때.

○강병원 위원 아닙니다. 첫날 하고요 종감 하고요.

○위원장 김교홍 첫날, 첫날.

○이만희 위원 아니, 종감 때 하는 겁니다.

○문진석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교홍 그걸 왜 종감 때 해?

○이만희 위원 처음부터 종감으로 제시를 받았 습니다, 저도.

○강병원 위원 아닙니다. 용혜인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첫날을 요청하는 겁니다.

○용혜인 위원 위원장님!

○문진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합의도 잘 안 된 상태에서 전체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또 우리 행안위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행안위가 지금까지 36년 동안 선거관리위원장을 부르지 않은 그런 관례를 깬다는 것이 이게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헌법기관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장을 부르지 않았던 것이란 말이지요, 지금까지. 그런데 갑자기 선거관리위원장을 부른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갑자기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부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을 가지고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용혜인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용혜인 위원님.

○용혜인 위원 저는 관례 깰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선거관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꼭 부르셔야겠다고 하면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저도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드렸던 만큼 제가 논의드린 것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저는 형식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교홍 잠깐, 조금 이따요.

○문진석 위원 그리고요 잠깐만 추가 말씀드리면 충북도는 사실은 기관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 곳이에요. 그 관례가 보통 지방정부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국정감사를 하기로, 관례예요. 그것도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국정감사 할 수 있어요, 충북도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장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등치시켜서……

○위원장 김교홍 아니, 그러니까……

문진석 위원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사에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증인이 아닌,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서 증인이 아닌 국정감사장에 모셔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법에도 나와 있고. 또 법사위에서도 대법원장, 헌재소장을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그분들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법사위에서 위원들이 의결하고 행안위에서는 위원들이 의결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하자는 거고 두 분 여야 간사가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겁니다.

○문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동일한 선상에서 충북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혜인 위원 제가 요청드린 것도 함께 논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지금까지 그 문제가 논의가 안 됐다가 오늘 안건을 다 채택하는데 여기서 그러시면 상임위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을 일반증인으로 불러서 국감 때 하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천준호 위원** 아니, 여러 명 안에 묻혀서 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질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행안부장관하고 경찰청 종합감사 하는데 거기에 여러 명 중의 한 명으로 충북도지사 불러 가지고 질문이나 한 번 하겠습니까, 돌아가면서?

○**위원장 김교홍** 그동안에 여야 간사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 것을 상임위에서 오늘 의결하는데……

○**천준호 위원**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행안위에서 해야 될 게 뭔지를 남겨 놓고 자꾸 사실은 정치적 쟁점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일방적으로 타협을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봉민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할게요.

○**위원장 김교홍** 예, 전봉민 위원님.

○**전봉민 위원** 전봉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국감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국감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우리도 관례적인 예우를 다 해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특혜채용이라든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안 물어볼 수가…… 당연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도 같이.

○**이해식 위원** 아니, 사무총장한테 질문하면 되지요. 사무총장이 계십니다.

○**전봉민 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그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은 다른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례적으로 안 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간사님들끼리도 합의를 해서 오송참사 사건도 질의를 한다고 했으면 원만하게 빨리 회의를 해서……

위원장님, 빨리 이것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위원장 김교홍**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여야 위원님들 간에 소통이 좀 미흡한 면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요. 그동

안에 협의가 진행이 잘 안 되다가 오늘 여러 문제들이 나와서 상임위 일정이 약간의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정리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국감 때 증인이 아닌, 여야 위원들이 의결을 하면 위원회에 나와서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것은 별도로 여야 의결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충북도와 청주시는 국감 첫날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만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옹혜인 위원** 그러면 오늘 처리하지 말고 다시 논의해 주십시오, 간사님.

○**권인숙 위원** 다시 논의 시작합시다, 그러면.

○**이형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이만희 위원** 아니, 그것은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형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위원장 김교홍** 예,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지금 여러 가지 중앙선관위 문제로 이렇게 회의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유감스럽습니다, 대단히. 특히 지금 일반증인에 대한 합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우려스러운데 이 논의 자체를 다음번……

위원장님, 일반증인에 대한 합의도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위원장 김교홍** 일반증인은 좀 시차가 있으니까.

○**이형석 위원** 그런데 상임위가 언제 또 열립니까?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교홍** 한 번 더 열어야 돼요.

○**이형석 위원** 한 번 더 열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 선관위 문제도 같이 이야기, 논의를 하시지요. 왜 오늘 여기서 갑자기 그것을 결정하시려고 그래요? 저는 이것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이게 상임위가 여야 간의 합의로 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 여당 측에서 강렬하게 하니까 제가 중재안을 낸 거예요.

○**문진석 위원** 합의도 중요한데 합의가 자꾸 깨지면서 새로운 변수들을 가지고 또 얘기하시니까……

○**이해식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교홍** 아니,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여기 나와서 질의응답하는 게 뭐 잘못됐

습니까?

○**천준호 위원** 아니, 사전에 합의가 됐다고 해서 회의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의를 제기하신 것 아닙니까, 여당 쪽에서?

○**문진석 위원** 아니,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비례원칙으로 하자는 거예요. 비례원칙으로 하자는 거지, 충북도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김교홍** 충북도는 도지사하고 청주시장을 첫날 국감 때 나와서 하는 것으로 합의해야지요.

○**권인숙 위원** 반대하신다고 하니까 또 그러는 거지요. 이럴 거면 차라리……

○**이만희 위원**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더 사실 분들을 중감……

○**이해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교홍** 이만희 간사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그러면 중감 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오송 지하 참사가 일어난 지가 벌써 언제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못 했다가 이번에 일반증인도, 그것도 충북도로 안 가고 일반증인으로 하는 것도 아마 야당에서 양보한 것 같은데 그러면 국정감사 처음 시작할 때 충북도지사하고 청주시장을 불러서 국정감사 하는 게 맞지요.

그리고 선관위 부분도 원래 관행상 안 되는 것을 위원장이 조정해서 그런 안을 내서 하셔서로, 여가 있고 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를……

○**이만희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왜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자꾸 말을 끊으려고 그러니까?

그 정도도 만약에 못 받아 주면 어떻게 여야가 상생해서 위원회를 갈 수 있습니까? 처음 국정감사 때 충북도지사하고 청주시장 부르자는데 그걸 굳이 10월 26일 날 마지막 중감 때 하자는 이유가 됩니까? 그게 뭐예요?

○**이만희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 잠깐, 제가 먼저 신청했어요.

○**위원장 김교홍** 이해식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해식 위원** 아니 자꾸, 정말 참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중앙선관위원장을 부르자는 문제를 꺼내 가지고 지금 거의 회의를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선관위 관련된 문제는 이전에 현안질의도 했고

수사가 진행이 됐고 인사조치도 있었고 자체 내 그런 여러 가지 조사도 있었고 또 사무총장 새로 오셨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사무총장께 질의를 하면 되는데 중앙선관위원장을 굳이 부르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건데, 사실. 그런 주장을 계속 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천준호 위원님이나 용혜인 위원 말씀하셨지만 저는 마땅히 오송 참사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오송 참사를 다루지 못 하면 행안위가 사실은 중요한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저는 국민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감 때 일반증인으로 불러서 하면 안 된다.

○**위원장 김교홍** 알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아니, 충북지사를 왜 일반증인으로 불러야 됩니까, 기관증인인데? 저는 정식으로 포함시켜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아니, 그런데 기관증인으로 하려면 우리가 충북도를 이번에 포함했어야 되는데 이미 여야 간사끼리 합의할 때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권인숙 위원** 합의하면 되잖아요.

○**강병원 위원** 중앙선관위원장도 합의 안 돼 있었어요.

○**천준호 위원** 아니, 선관위 건은 합의 파기하고 다시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합의를, 다시 논의해야지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강병원 위원** 중앙선관위원장도 합의 안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을 국정감사 첫날에 하는 것으로 합의하자니까요, 첫날에 일반증인으로.

○**이만희 위원** 일반증인 문제는 어쨌든 간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교홍** 위원장이 화나면 이제 이게 건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알아서 하셔.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위원회를 끌고 갑니까? 여기가 무슨 애들 노는 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만희 위원** 아니, 제가 무슨 위원장님한테…… 위원장님한테 애들 취급당하고 우리가 왜 여기를, 애들 노는 장소로 얘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해식 위원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질의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는.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은 저는 생각할 때는 법상……

마이크 좀 넣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 아니, 중앙선관위원장이 바뀌었잖아요.

○**이만희 위원** 중앙선관위원장이 당연히 기관중인의 대상에 저도 포함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해식 위원**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 선거 과정의 선관위원장이 바뀌었잖아요.

○**이만희 위원** 제 얘기 좀 들어 보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마이크 넣어 드려요.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의 관례를 얘기하시면서 다른 국회법의 조항을 들어서 적어도 위원들의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 문제라든지 보안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충북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은 여야 간사 간에 증인 채택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까 동의했었습니다. 했지만 그것을 어느 시기에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논란이, 얘기가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강병원 간사와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되잖아요?

○**강병원 위원**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석 달을 기다렸는데……

○**위원장 김교홍** 아니아니, 그런데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도 일반증인으로 하되 오늘 의결해야 합니다. 의결을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의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첫날에 하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간에 서로가 배려하면서 상임위가 돼야지, 첫날 하나 마지막 날 하나 이만희 간사님은 그것 가지고 왜 그렇게 미묘하게 신경을 곤두세우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세요.

○**이만희 위원** ……

○**위원장 김교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 이게 무슨 허락받고 할 일이에요, 당연한 것일? 허락받고 합니까?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렇게 하면?

(「예」 하는 위원 있음)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추가하겠습니다.

2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출석 요구의 건 (16시36분)

○**위원장 김교홍** 의사일정 제24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위원** 충북은 첫날로 된 겁니까?

○**위원장 김교홍** 아이고, 성격도 급해. 내가 어서 하잖아.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1조제5항에 따라 노태악……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아니 그 부분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진석 위원** 이미 합의했다면서요.

○**위원장 김교홍** 아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렇게 해서 했으면 이것도 해 줘야지……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강병원 위원** 아니, 이만희 간사님 원하는 것만 다 얻고 왜 야당이 요구하는 것은 다 그렇게 무시합니까?

○**위원장 김교홍** 노태악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일에 출석시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요구 일시는 10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만희 위원** 당연히 나오셔야지요.

○**위원장 김교홍**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6시38분)

○**위원장 김교홍** 또 의사일정을 1건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추가의 건은 충청북도 도지사와 청주

시장의 증인 채택 여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해식 위원 잠깐만요, 도지사지요?

○위원장 김교홍 그럼 도지사지.

(웃음소리)

아니, 오늘 여야 위원님들 왜들 그러세요?

○이해식 위원 아니, 부지사로 들려 가지고 깜짝 놀라 가지고. 부지사로 들렸어, 내가.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의사일정을 추가하겠습니다.

242.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김교홍 의사일정 제242항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석 요구 대상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며 출석요구일은 10월 10일 국감 첫째 날입니다.

증인 채택에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이어서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6.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3581)

7.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02)

8.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6)

9.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0)

1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0)

1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2)

1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8)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7)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3)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5)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6)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8)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04)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25)

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75)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94)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4)

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3)

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97)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37)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52)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7)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9)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16)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8)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3)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2)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6)

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24)

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8)

3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387)

4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7)

4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50)

4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1)

4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2)

4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81)

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42)

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3)

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2)

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6)

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57)

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59)

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6)

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6)

5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22)

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37)

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5)

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8.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8)

5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5)

6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52)

61. **119긴급신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9)

(16시40분)

○위원장 김교홍 의사일정 제6항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1항 119긴급신

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까지 5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병원 소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강병원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교홍 의원, 송석준 의원, 이형석 의원, 송갑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5건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 중에서 청소원, 건물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공보 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관할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등을 통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만희 소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이만희 위원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4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덕 의원,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관리청인 시장·

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소하천 정비중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수해 방지를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직접 점용물 제거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를 신설하며, 소하천 불법 점용·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액과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소하천에서의 수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송석준 의원, 김정호 의원,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지하공간 침수방지기준 대상시설 소유자가 그 기준에 따라 설치된 침수방지시설물을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홍수위에 도달하였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홍수통제소의 장이 즉시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하여 수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습적인 침수 우려가 있는 시설의 지하층을 임시주거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기현 의원, 임호선 의원 등 총 22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중이 참여하는 지역축제의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재난안전관리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업무수행 중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찰관서의 장이 즉시 그 사실을 관할 지자체장과 긴급구조기관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기상청장이 직접 재난에 관한 예보나 경보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을 추가하며,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의 대응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예방·대비를 위한 목적으로도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용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운영비 보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단의 결손을 보조하는 내용은 삭제하되 재원 조달 유형에 출연금 형태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교홍 의원, 정우택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의무 범위에서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시켜 어린이통학버스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제도를 도입하여 음주운전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은 112신고의 신속 접수·처리, 112시스템의 관리·운영 등 112신고의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112신고 접수와 처리를 위한 위치정보 조회와 같이 기존 현행법에 근거가 있는 규정은 삭제하고 112신고자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등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용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율방범대가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종아동이 가족과 만날 때까지 별도의 연장 요청 없이도 유전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를 폐기할 수 있도록 명시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119긴급신고 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 주체를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로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감사합니다.

강병원 소위원장님과 이만희 소위원장님을 비

못한 소위원회 위원님 모두 법안심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에 한하여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영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환 위원 토론은 아니고요, 오늘 의결을 앞둔 법안들에 관해서 정부 부처 기관장분들께 당부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오늘 재난 기본법, 재해대책법을 비롯해서 국민 생명·안전, 재난과 관련된 법안들 앞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부 출범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오송 참사도 있었고 이태원 참사, 작년에 헌남노 집중호우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셨고요.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정말 많은 재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피해의 책임에 대해서는 또 국민의 희생을 대하는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이견도 있었고 논쟁도 있었습니다. 끝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민들께서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시고 판단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주무부처로서 수없이 많은 TF와 개선대책들을 마련하고 특별대책들을 또 발표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하지만 일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이런 재난 속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기대하고 신뢰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해졌다 이렇게 믿을 만한 변화는 아직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비롯해 많은 법들을 개정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한 변화에 노력을 했습니다. 아직도 개선해야 될 바꾸어야 될 그런 논의 과제들이 그러나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들은 여당뿐만 아니라 저희 야당 위원들도 그렇고 정

말 적극적으로 정책 제언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아직 적극성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재난 주무부처의 근본적인 정부 조직의 개편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러 방향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국민 생명·안전에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라면 여야 어느 당이든 적극적인 정책 제언들에 대해서 좀 더 열린 태도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 줄 수 있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환 위원 경찰청장님과 소방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을 앞둔 법안이 119신고에 관한 법률, 112신고에 관한 법률들입니다. 119·112라는 이 번호들은 단순히 긴급신고 전화가 아니라 생사의 기로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있는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뻗는 그런 번호입니다.

그러나 구하지 못한 분들이 지난 시간 동안 너무 많았고요. 21대 국회 들어서도 법안들이 빨리 발의됐음에도 처리가 늦으면서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로 희생이 생긴 거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앞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119·112라는 이 특별한 번호가 더욱 충실히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만큼 더 많은 국민들의 손을 제때 잡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구해 낼 수 있도록 소방청과 경찰청이 대한민국을 보다 안전한 국가로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소방청장 남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환 위원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윤희근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다음은 용혜인 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최대한 줄여서 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오늘 의결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관해서 대안에 포함된 정부안 중 제15조의2제1항 개정에 관해서 본 위원의 반대의견을 명확하게 표명합니다.

재난안전법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한번 찾아보시면 수십 개 조항에 똑같은 문구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재난 관계 기관들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해야만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난안전법의 근간이고 대한민국 재난대응시스템 자체입니다.

일단 정부안의 개정 취지는 이 시스템 자체를 경직성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법 개정을 시도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재난에는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대처하려고 수차례 지시를 하시는데 재난 상황에 중수본을 의무 설치하는 원칙조차 폐기하는 것이 대한민국 재난 대응체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2소위 심사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존중하지만 마련된 대안은 최악의 퇴행만 막았을 뿐이지 여전히 개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바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걸 단서를 달아서 심지어 시행령에 위임해 가면서 정하도록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단서조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중에 정부가 재난안전법상의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정부가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다,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없었다, 중대본이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고 하면 국민도 국회도 정부에 책임을 단 한 톨도 물을 수 없게 될 뿐입니다. 어떻게 잘할 구실이 아니라 안 할 구실을 만드는 독소조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법 개정의 실익이 뭔지도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재난안전법의 고삐를 하나하나 풀어 주는 선례를 만들고 단서조항 달아서 위임규정 달아서 개정을 해 버리면 결국에는 재난안전법은 누더기가 되고 피해 보는 것은 국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용인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의 제15조의2제1항 개정사항은 삭제하고 현행법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난안전법의 취지상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15조의2제1항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 바입니다.

다. 이것을 삭제하고 수정해서 의결할 수 있기를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흥 더 이상……

○이형석 위원 자료 요청 먼저……

○위원장 김교흥 예,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 광주 북구율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행안부장관님, 오늘도 지방세 관련 법안들이 많이 상정돼 있는데 이게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들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기재부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보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직 못 봤습니다.

○이형석 위원 못 봤어요, 그 중요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59조 1000억 가까이거든요. 당초에는 40조 정도 세수추계 오류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60조 가까이 세수추계 오류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지방세도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지방교부세도 23조가 감소될 거 같고, 제가 예결위 때 자료를 챙겨 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방세 수입도 지금 5조 7000억이 결손이 날 거 같아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지출 포기 선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2000억의 지출 포기를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이렇게 지금 자치단체가 지방세 감세 때문에 지방세가 줄어든 거 때문에 굉장히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행안부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느냐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국감 들어가기 전에 재정 안정화 관련 돼서 지금 지자체와 협의 중인 사안이 있다랄지 아니면 추진 중인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저희 사무실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흥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할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법률안 의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정안인 의사일정 제58항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과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의 제명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제1조(목적)부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6조(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부터 제10조(112신고자에 대한 보호)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1조(출동 현장의 촬영·관리)부터 제14조(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5조(교육·훈련 및 홍보)와 제16조(112신고자 포상)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7조(벌칙)·제18조(과태료)와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축조심사하겠습니다.

법률안의 제명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조(목적)부터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7조(119긴급신고 기본계획 수립·시행)부터 제14조(119영상 촬영·관리 등)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15조(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부터 제20조(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1조(예산의 확보·지원 등)부터 제25조(대

국민 홍보)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6조(벌칙)·제27조(과태료)와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으로 제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9항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3항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36항까지 이상 2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37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옹혜인 위원** 위원장님, 반대의견만 남겨 주십시오.

○**위원장 김교흥** 이거 반대의견만?

○**옹혜인 위원** 예. 표결……

○**위원장 김교흥** 이거 표결을 해야 되니까……

○**옹혜인 위원** 반대의견을 남겨 주시면……

○**위원장 김교흥** 아, 반대의견을 속기록에 남기겠다는 거지요?

○**용혜인 위원** 예.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용혜인 위원 한 분이 반대 의견을 했다는 걸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3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44항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부터 56항까지 이상 1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57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1항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부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소하천 정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방지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다중운집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을 내실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결된 법안이 차질 없이 시행·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창구를 일원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희근 경찰청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12신고 처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등 총 4건의 제·개정 법률안입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화영 소방청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남화영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소방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법안 중에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119법은 3년 만에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웅 위원 한마디 들으시지요.

○위원장 김교홍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5)

63.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9)

64.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22)

6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13)

66.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13)

6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0)

6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93)

69.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0)

70.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40)

71.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03)

7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65)

7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8)

7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834)

7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1)

7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1)

7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94)

7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6)

7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44)

8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24)

81.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38)

8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87)

8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99)

84.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07)

85. 자전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8)

8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0)
8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97)
8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1867)
8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2467)
90. 제주4·3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위성곤 의원 등 44인
발의)(의안번호 2121904)
9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1840)
9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2934)
9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3506)
9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2197)
9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122833)
9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03)
9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89)
9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7)
9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30)
10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122575)
10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61)
1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1)
10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87)
10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01)
10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5)
10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2162)
10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2882)
10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3293)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2)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6)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8)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1)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1)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75)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0)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2)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56)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25)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12)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4)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4)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9)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4)
1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22)
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5)
1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33)
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7)
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8)

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2)
13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6)
13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96)
13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1)
13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83)
13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8)
13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4)
13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70)
13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01)
138.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7)
139.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4)
14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1)
141.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1)
142.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9)
14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45)
1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8)
1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55)
1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5)
1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46)

1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09)
1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6)
150.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권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2636)
151.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41)
1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3)
1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7)
1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9)
1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8)
1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69)
1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5)
1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74)
1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8)
1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6)
161.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7)
16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54)
16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2)
16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24)
16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2)
16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1)
16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94)
16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0)
16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37)

170.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6)
17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20)
17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5)
173.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45)
17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470)
17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10)
17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53)
17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0)
17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06)
17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8)
18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7)
18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24)
18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68)
18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3)
18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0)
18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80)
18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31)
18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26)
18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04)
18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34)
19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66)
19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89)

19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88)
19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0)
19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55)
195. 녹색어머니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26)
19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31)
19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5)
19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35)
1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86)
20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61)
2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3)
2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08)
2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09)
2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76)
2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0)
2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39)
2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2)
2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7)
2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95)
2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80)
2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8)
2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25)
21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10)

21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72)
21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28)
21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2)
21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3)
218.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95)
219. 주취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56)
220.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70)
221.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46)
222. 주취자 보호 및 공공안전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48)
22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22)
22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2038)
22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93)
22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2352)
2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3359)
22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3540)
22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25)
2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0)
23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4)
23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122309)
23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9)
23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5)
235.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7)

23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7)
23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7)
23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42)
23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2)
24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5)
(17시07분)

○위원장 김교홍 의사일정 제62항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부터 의사일정 제240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7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
서를 갖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구두설명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제
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철 의원님이 아까부터 와서 계시는데 의원
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9항 정부조직법 일부개
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철 의원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홍
위원장님!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간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제 지역구가 위치한 전남 순천을 비롯한 남해
안권은 풍부한 관광 및 문화자원 등 무한한 잠재
력을 보유하고 있는 신성장의 영역입니다. 이 남
해안권의 개발·발전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 그랜
드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이미 대표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남해안권이 대양을 향해 나아가는
전진기지이자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으로
도약해서 남해안권의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동서 화합과 상생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
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리는 법안은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
리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권

종합개발청을 두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총괄하는 남해안권종합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여 더 체계적이고 더 효율적인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제안해 드린 바와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소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4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두 번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부과를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형량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활용되도록 공유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해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도록 국민께서 온·오프라인 구매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원 증명이 가능하도록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 인사 운영을 위해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4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혁신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건강에 손상을 입게 된 경우 이를 공무원 재해로 간주하여 보상함으로써 국가의 책임과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 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근 경찰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3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정부에서 제출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선정과제로서 행정상 경미한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조항을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벌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위축시키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화영 소방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2항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남화영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법률안은 공사사업자가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소방청장의 자료제출 요구를 소방시설업자나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이 거부하거나 검사·조사 등을 방해하는 경우에 행정형벌로 처벌하던 것을 행정질서벌로 완화함으로써 민간 경제활동 활성화와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내의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상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법률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및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법률안 76건 중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의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국토외곽 먼섬에 대해 정주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입니다.

국토외곽 먼섬이 우리나라 최외곽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생활 여건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섬을 떠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제정안은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공동화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해양영토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개발 대상 섬,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서해 5도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섬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조웅천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총 21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몰기한만을 연장하는 법률안은 13건이고 나머지 8건은 기존 특례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일몰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농수산업에 대한 지원 및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일몰기한의 설정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왔음을 참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호선 의원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혁신도시법에 따라 매입하는 종전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농어촌공사가 실제로 종전부동산을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과 농어촌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 규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재산세 면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사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매입·개발 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기납부한 재산세를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과 현행 조문에 대한 일몰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관 의원안은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대형 항공사에 대한 한시적 재산세 감면 조항을 삭제하여 저비용 항공사와 같은 지속적인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감하였던 영업이익 및 여객운송실적이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의 자산 규모 및 담세력의 차이, 19년 법안심사 당시 대형 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축소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나 21년 법안심사 과정에서 대형 항공사의 경우 다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년의 한시 감면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먼저 위원

회의 권고사항을 소관하는 국가기관에 대해 해당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둘째 권고사항의 이행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권고사항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의 개별적·구체적 의사에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관계, 국가기관의 직무 범위와 권한 행사라는 관점에서 검토가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고, 유사입법례인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과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교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규찬 전문위원입니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관 법률안 총 64건의 법률안 중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45항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에 긍정적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현행법 체계는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비상계획 수립,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등 에너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인사혁신처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86항 김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를 결격기간의 제한 없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미

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 결격기간을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으로 하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10년이라는 결격기간의 적정성과 관련 현행법상 다른 사유에 의한 결격기간 등과 비교하여 적정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경찰청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92항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총경 계급까지 승진소요 최소근무연수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치안감 계급까지 확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승진소요 최소근무연수 적용 계급을 확대하고 해당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경찰 고위직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여 인사의 책임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계급제도 및 직무의 특수성, 다른 직렬 국가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소근무연수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7항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속도로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탑승한 특별교통수단을 고속도로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버스 등 다중수송차량의 이용을 촉진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는 고속도로 전용차로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교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문근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입니다.

김용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하여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선거기간 중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기능이 강화되고 폭넓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보입니다.

민형배·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3개월의 회계보고 열람기간을 5년 또는 6개월로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3개월의 열람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열람기간을 적절한 범위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소방청 소관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119종합상황실에 배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긴급재난 발생 시 원활한 공동 대응을 위해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 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 주체로 현행의 시·도지사 외에 시장·군수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박주민·조명희·강병원·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된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진행할 순서인데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문진석 위원 우리가 국정감사 10월 10일 날 첫날 일반증인에 대한 의결은 다음 주까지 마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다음 주 중에 일정을 좀 잡아 주십사 말씀드리고.

또 다음 주가 추석 연휴다 보니까 지방에서 활동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미리 공지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여야 간에 간사끼리 협의를 마쳐야 돼요. 위원장이 마음대로 하면 다 뭐라고 그러지. 협의를 하세요.

○문진석 위원 아니, 당연히 간사님들…… 위원장님이 간사 협의를 중용하셔야지요.

○강병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강병원 간사님.

○강병원 위원 방금 이만희 간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25일에 여야 간에 본회의를 잡을 수 있도록 예정을 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본회의가 잡히면 그날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주십사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 끝나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증인 협상을 해서 최대한 다음 주 초에 전체회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래요.

다음 주 초가 아니라 25일 날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전체회의?

○강병원 위원 최대한 그날을 맞추려고,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서.

○이만희 위원 25일 날 본회의가 있으면 25일 날 우리도 하고 만약에 없으면 26일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날짜를 별도로 잡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꼭 9월 안으로 두 분이 지혜를 모아서 잘 협의를 해서 전체회의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소관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1소위원장님과 이만희 2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법률안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중에 이해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위원님의 질의 취지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공무원과 보좌직원 여러분까지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빠른 시간 내에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

일반증인 명단

증인(18인)

성명	직업	요구위원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김영환	충청북도도지사	강병원	10. 10.(화) 행정안전부
이범석	청주시장		
김학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	강병원 이만희	10. 16.(월) 서울경찰청
김성섭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김덕섭	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장	강병원 이만희	10. 17.(화) 경가남부경찰청
신현기	경기도북부 자치경찰위원장		
김병화	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정용환	경기도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이병록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	강병원 이만희	10. 19.(목) 인천경찰청
반병욱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설용숙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	강병원 이만희	10. 23.(월) 대구경찰청
박동균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이종원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장	강병원 이만희	10. 23.(월) 충청남도경찰청

성명	직업	요구위원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이시준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강병원 이만희	10. 23.(월) 충청남도경찰청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	강병원 이만희	10. 24.(화) 전라북도경찰청
방춘원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공석)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	강병원 이만희	10. 24.(화) 강원경찰청
김종관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강병원 이만희	

○출석 위원(20인)

강병원 권인숙 김교홍 김기현
김웅문 진석 박성민 송재호
오영환 용혜인 이만희 이성만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전봉민
정우택 조은희 천준호 최기상

○청가 위원(1인)

김용판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소병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전문위원 박규찬
전문위원 신문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차관보 구만섭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디지털정부실장 서보람
지방재정경제실장 최병관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용철
자연재난실장 김광용
사회재난실장 진명기
혁신조직국장 서주현
재난복구지원국장 박천수
민방위심의관 박종현

인사혁신처

처장 김승호
기획조정관 이정민

인사혁신국장	김성훈
인사관리국장	박용수
윤리복무국장	이은영
재해보상정책관	김정민

경찰청

청장	윤희근
기획조정관	김준영
경무인사기획관	최종문
생활안전국장	김준철
치안상황관리관	황창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정근

소방청

청장	남화영
기획조정관	배덕곤
장비기술국장	김승룡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김광동
사무처장	송상교
기획운영관	김현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무총장	김용빈
기획조정실장	조규영
법제국장	김범진